

## 소년범죄의 실태와 교정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옥필훈 교수<sup>1)</sup>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소년범죄의 발생원인과 실태
- III. 소년범죄자의 처리
- IV.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교정복지 실천방안
- V. 맺음말

### 국문요약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고, 이에 대하여는 성인범죄자와 달리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국친사상에 바탕을 둔 소년사법의 정책과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범죄통계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성인기로 가기 전단계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환경과 학교교육일 것이다. 가정환경에서는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등이 전제될 때 학교교육에서는 민주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하에서는 대학입시 등 경쟁구도에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천성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찾고 이를 통하여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회복적 사법논의 및 모델 등이 선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이를 소년사법제도에 응용하여 책임감을 갖게 하지만 과거 부정적인 경험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시스템 마련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핵심어 : 소년범죄, 교정복지, 소년사법, 효율적인 방안

1)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법학박사.

## I. 머리말

현대사회에서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청소년비행, 자살, 약물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이에 따라 소년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년범죄는 범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회문제로서 연일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서는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특징에 대한 비판점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청소년비행에 대한 책임을 청소년들에게만 지울 수 없는 것은 유해한 사회적 환경의 희생자라는 사실이다. 소년범죄는 계속적으로 범행의 유형이 질적으로 난폭해지고 재범률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년범죄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 6만 6,259명, 2019년도에 6만 6,204명, 2020년도에 6만 4,595명으로 다소간 감소되는 측면을 보이지만, 특히 사이버범죄로 검거된 소년은 2018년 8,642명, 2019년 9,651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월 인천 초등학교 납치 후 살해한 여중생, 2017년 6월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2019년 10월 익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최근 범죄유형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전에 없던 극악무도한 범죄가 청소년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불안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소년범죄는 소년법 제1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소년법 제1조). 여기서 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거나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는 등 장래 범법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우리나라 소년법 제6차 일부개정 후 2008년 6월 22일부터 실시된 개정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법 적용대상 상한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졌고, 촉법소년의 적용대상이 12세에서 10세로 낮추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윤태현, 2017). 아래에서는 먼저 비행(非行, delinquency)과 범죄(犯罪, crime)의 용어는 구분지어야 할 것인바, 전자는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그 한계가 애매하나, 법적인 제재보다는 윤리적 비난이나 보호처분 등 사회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어 비행자 중심의 개념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행위중심의 개념으로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주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지칭한다(손순용, 2006). 따라서 소년비행을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범죄소년과 촉법소년만이 소년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우범소년까지 포함한 개념이 소년비행이라고 할 수 있고(박상기·손동권·이순래, 2011), 소년범죄를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소년범죄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배종대, 1998). 그러나 어느 견해라고 할지라도 소년법의 규정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과 재사회화를 통하여 재범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정복지적 실천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소년범죄의 발생원인과 실태

아래에서는 먼저 소년범죄의 원인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과 사회현실 속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발생요인을 개인적 발생원인, 가정적 발생원인, 사회적 발생원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난 후 소년범죄의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발생원인

#### 1) 일반적 원인론

대체적으로 생물학적인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학적 원인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첫째,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이탈리아의 정신의학자인 롬브로조(C. Lombroso)는 1876년 「범죄인론(The Criminal Man)」이라는 저서를 발표하여 격세유전(atavism)의 관점에서 범죄자들은 정상인과 구별되는 특수한 신체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Conklin, John E, 1995 ; 옥필훈, 2019). 그는 범죄인의 분류를 환경여하를 불문하고 운명적으로 범죄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생래적 범죄인(生來的 犯罪人), 간질범죄인, 분노, 사랑, 명예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격정에 의한 범죄인, 정신병 혹은 정신박약범죄인, 선천적인 범죄성향이 있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기회범죄인으로 분류하였다(신현옥, 2020). 둘째, 심리적인 원인으로 범죄의 원인이 심리적, 정신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초기에는 범죄자의 정신을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인간특성의 차이 등에서 찾으려는 접근방법이다. 특히 사이코패스(psychopath)는 ‘범죄충동 억제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안성조, 2008). 셋째, 사회학적 원인으로 일찍이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난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sation theory)’ 혹은 ‘생태론적 이론(ecological theory)’을 비롯하여 범죄사회학적 이론은 학자들마다 연구하는 이론적 배경은 다양하다(이창무, 2011).

#### 2) 발생원인

##### (1) 개인적 발생원인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또래집단(peer group)일 것이다. 또래집단은 서로 비슷한 나이와 정서적 교감이 쉽게 교통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분위기도 서로 비슷한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사회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아닌 대학준비를 위한 교육으로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획일적인 수업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어 학업스트레스와 불만족감을 이기지 못하고 비행 또는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이은영, 2012).

##### (2) 가정적 발생원인

소년범죄에서 가정환경, 특히 성장발달 초기단계에서의 가정환경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박성희, 1997). 가정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서 인격형성과 심신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동시에 범죄에 대한 잠재적 억제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부모-

자녀관계는 자녀에 대한 비행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 통제요인이다(양문승·송재영, 2012).

### (3) 사회적 발생원인

아동 및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환경 이외에도 주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또래집단의 압력, 부정적인 대중매체, 성인문화에 대한 호기심 등에 의해 일탈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이용주, 2019). 또한 퇴폐향락시설, 유행업소, 모방충동을 자극하는 대중매체 등은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박성희, 1997).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하여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가고 있고, 그 역효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세대 간 불신을 조장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상호간 이해하지 못하며 각종 오해와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스마트폰 중독 역시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 인하여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성식·강은영·최수형, 2015).

## 2. 소년사법의 대상과 발생현황

### 1) 소년사법의 대상

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이라고 명시하며, 범죄소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범죄는 형법상의 범죄 뿐만 아니라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된다. 소년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제1항),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 및 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1항) 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내리는 판단이며,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하여 반사회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유학희, 2008). 그러므로 형사처분을 할 것인가에 따라 위법성의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

②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한다. 2008년 6월 22일부터 개정 「소년법」의 시행으로 소년법 적용대상 상한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졌고, 촉법소년의 적용대상이 12세에서 10세로 낮추어졌다. 본 규정은 촉법소년이 범죄소년과 같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법상의 책임능력(형법 제9조)이 없는 자, 즉 범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다른 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책임능력만을 결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저촉되는 형벌법령이란 형법은 물론 특별법도 포함된다.

③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우범소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범소년은 바로 성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지위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말하며, 이 지위비행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우범성과 우범사유'를 갖추어야 한다(점승헌, 2002).

2) 소년범죄의 특성과 발생현황

소년범죄의 특성으로 저연령화, 흉포화, 충동적·맹목적, 집단화, 누범화 등을 들고 있으나(문화관광부, 2006 ; 윤주영, 2006), 아래와 같이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소년범죄의 일반적인 현황

일반적으로 소년범죄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고 있으나, 소년범죄의 흐름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죄백서」, 「청소년백서」, 「범죄분석」 등 먼저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아래 <표 1>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범 인원, 소년범죄발생비 및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것으로, 전체 소년범은 2010년 101,596명, 2011년에는 100,032명, 2012년에는 104,808명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세를 보여주었으나 그 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19년에는 66,247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하여 34.8% 감소함으로써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

<표 1> 소년범죄 인원, 소년범죄발생비 및 소년비 현황 (2010년 ~ 2019년)

[단위 : 명(%)]

연 도	소년범죄	소년범죄발생비	성인범죄발생비	소년비
2010	101,596	1,654.3(-)	4,462.4(-)	5.4
2011	100,032	1,660.2(100.4)	4,374.3(98.0)	5.3
2012	104,808	1,796.8(108.6)	4,387.3(98.3)	5.5
2013	88,762	1,581.1(95.6)	4,520.3(101.3)	4.5
2014	77,594	1,440.4(87.1)	4,338.3(97.2)	4.2
2015	71,035	1,411.8(85.3)	4,482.4(100.4)	3.8
2016	76,000	1,547.9(93.6)	4,373.5(98.0)	3.9
2017	72,759	2,486.0(150.3)	4,089.8(91.7)	4.0
2018	66,142	2,486.0(150.3)	3,808.2(85.3)	3.9
2019	66,247	2,696.1(163.0)	3,821.9(85.6)	3.8

- 주 : 1. 대검찰청( ), 「범죄분석」, 각년도  
 2. ( )안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지수.  
 3. 2018년부터 소년범죄 집계시 14세 미만 소년을 제외함.  
 4. 범죄발생시는 해당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수.  

$$\text{소년비} = \left( \frac{\text{소년범}}{\text{소년범} + \text{성인범}} \times 100 \right)$$

② 소년범죄의 범죄유형별 현황

아래 <표 2>은 전체 소년범죄를 소년 형법범죄와 소년 특별법범죄로 구분하여 소년범죄 인원과 구성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는 소년 특별법범죄자의 50.9%가 16~17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18세 27.6%, 14~15세 20.0%의 순이었다. 이후 18세 비율은 증가하였고, 반면에 14~15세와 16~17세의 비율은 감소하여 2019년에는 16~17세가 48.4%, 18세 24.0%, 14~15세 17.5%를 각각 차지하였다.

<표 2> 소년 형법범죄와 소년 특별법범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2010년~2019년)

[단위 : 명(%)]

연도	전체 소년범죄	소년 형법범죄	소년 특별법범죄
2010	101,596(100)	78,056(76.8)	23,540(23.2)
2011	100,032(100)	78,456(78.4)	21,576(21.6)
2012	104,808(100)	86,440(82.5)	18,368(17.5)
2013	88,762(100)	73,075(82.3)	15,687(17.7)
2014	77,594(100)	63,145(81.4)	14,449(18.6)
2015	71,035(100)	56,962(80.2)	14,073(19.8)
2016	76,000(100)	61,162(80.5)	14,838(19.5)
2017	72,759(100)	58,255(80.1)	14,504(19.9)
2018	66,142(100)	54,205(82.0)	11,937(18.0)
2019	66,247(100)	54,497(82.3)	11,750(17.7)

주 : 대검찰청

아래 <표 3>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년 형법범죄 인원, 범죄발생비 및 소년비 현황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의 점유비율(소년비)은 2010년 5.4%에서 2015년 3.8%까지 감소하였다가, 2016년 3.9%, 2017년 4.0%로 2년 연속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8년 3.9%, 2019년 3.8%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

<표 3> 소년 형법범죄 인원, 범죄발생비 및 소년비 현황 (2010년 ~ 2019년)

[단위 : 명(%)]

연도	구분	소년 형법범죄			성인 형법범죄	
		인원	범죄발생비	소년비	인원	범죄발생비
2010		78,056	1,271(-)	8.3	865,529	2,155.1(-)
2011		78,456	1,302.1(102.4)	7.8	922,393	2,265.3(105.1)
2012		86,440	1,481.9(116.6)	8.3	950,726	2,302.9(106.9)
2013		73,075	1,301.6(102.4)	6.9	983,629	2,350.1(109.0)
2014		63,145	1,172.2(92.2)	6.2	953,064	2,244.9(104.2)
2015		56,962	1,132.1(89.1)	5.9	904,872	2,159.8(100.2)
2016		61,162	1,245.7(98.0)	6.2	920,760	2,111.8(98.0)
2017		58,255	1,248.8(98.3)	6.2	878,991	2,059.6(95.6)
2018		54,205	2,037.4(160.3)	5.8	878,917	2,043.5(94.8)
2019		54,497	2,217.9(174.5)	5.6	914,549	2,109.1(97.9)

주 : 1.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2. ( ) 안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지수.

3. 2018년부터 소년범죄 집계시 14세 미만 소년을 제외함.

4. 범죄발생비는 해당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수.

소년범

5. 소년비는  $(\frac{\text{소년범}}{\text{소년범} + \text{성인범}} \times 100)$ .

소년범 + 성인범

소년범죄는 흉포화되고 있다고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으나,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고서 그 흐름과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 <표 4>는 전체 소년범죄를 크게 소년 강력범죄(흉악), 소

년 강력범죄(폭력), 소년 재산범죄, 기타 소년 형법범죄로 구분하여 지난 10년간 소년 형법범죄의 범죄유형별 인원과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흉악범죄 인원은 2010년에 3,665명, 2011년에 4,049명으로 384명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3,609명, 2013년에는 3,489명, 2014년에는 3,158명, 2015년에도 2,713명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시 2016년에 3,343명, 2017년에 3,463명, 2018년에 3,509명, 2019년에 3,66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양상을 알 수 있다.

<표 4> 소년 형법범죄 범죄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2010년 ~ 2019년)

[단위 : 명(%)]

연도	형법범죄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	기타 형법범죄
2010	78,056(100)	3,665(4.7)	27,264(34.9)	43,599(55.9)	3,528(4.5)
2011	78,456(100)	4,049(5.2)	28,193(35.9)	42,851(54.6)	3,363(4.3)
2012	86,440(100)	3,609(4.2)	32,267(37.3)	46,044(53.3)	4,520(5.2)
2013	73,075(100)	3,489(4.8)	21,843(29.9)	43,707(59.8)	4,036(5.5)
2014	63,145(100)	3,158(5.0)	19,352(30.6)	36,271(57.4)	4,364(6.9)
2015	56,962(100)	2,713(4.8)	17,473(30.7)	32,068(56.3)	4,708(8.3)
2016	61,162(100)	3,343(5.5)	19,476(31.8)	33,088(54.1)	5,255(8.6)
2017	58,255(100)	3,463(5.9)	21,043(36.1)	29,056(49.9)	4,693(8.1)
2018	54,205(100)	3,509(6.5)	19,742(36.4)	26,497(48.9)	4,457(8.2)
2019	54,497(100)	3,665(6.7)	18,622(34.2)	27,809(51.0)	4,401(8.1)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 ③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소년범죄는 저연령화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논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표 5>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년 형법범죄 연령층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 구성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14~15세가 34.6%, 16~17세가 44.6%, 18세가 20.7%였으나, 2019년에는 14~15세가 34.4%, 16~17세가 40.7%, 18세가 24.9%로 지난 10년간 16~17세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18세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14~15세의 비율은 비슷하였다(범죄백서, 2020). 윤태현(2017)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연령층은 저연령층이 아니라 16~18세의 고령층이라고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저연령화되어가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 5> 소년 형법범죄 연령층별 현황 (2010년 ~ 2019년)

[단위:명(%)]

연령 연도	계	10세~13세		14~15세		16~17세		18세	
		인원	범죄 발생비	인원	범죄 발생비	인원	범죄 발생비	인원	범죄 발생비
2010	70,045 (100)	147 (0.2)	5.7	24,210 (34.6)	1,733.3	31,208 (44.6)	2,187.3	14,480 (20.7)	1,995.6
2011	66,240 (100)	98 (0.1)	4.0	19,417 (29.3)	1,428.2	32,627 (49.3)	2,291.3	14,098 (21.3)	1,983.4
2012	87,779 (100)	582 (0.7)	25.1	29,700 (33.8)	2,262.0	40,169 (45.8)	2,879.9	17,328 (19.7)	2,427.0

2013	74,509 (100)	241 (0.3)	11.0	24,735 (33.2)	1,961.8	33,014 (44.3)	2,430.9	16,519 (22.2)	2,332.4
2014	63,145 (100)	27 (0.0)	1.3	21,156 (33.5)	1,681.9	27,173 (43.1)	2,040.5	14,789 (23.4)	2,128.0
2015	56,962 (100)	45 (0.1)	2.4	12,632 (22.2)	1,052.8	28,660 (50.3)	2,273.8	15,625 (27.4)	2,326.9
2016	61,162 (100)	65 (0.1)	3.5	18,955 (31.0)	1,684.8	27,543 (45.0)	2,191.2	14,599 (23.9)	2,232.4
2017	58,255 (100)	38 (0.1)	2.0	17,695 (30.4)	1,788.9	26,112 (44.8)	2,177.4	14,410 (24.7)	2,325.2
2018	54,205 (100)	-	-	17,946 (33.1)	1,854.2	22,860 (42.2)	2,168.7	13,399 (24.7)	2,098.2
2019	54,497 (100)	-	-	18,721 (34.4)	2,056.0	22,195 (40.7)	2,246.7	13,581 (24.9)	2,430.8

- 주 : 1.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2. 범죄발생비는 소년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수.  
 3. 2013년 이전 현황은 2013년 이전 『범죄분석』 통계임.  
 4. 2018년부터 소년범죄 집계시 14세 미만 소년을 제외함.

<표 6>은 2019년 한 해 동안 형법범죄 유형별로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점유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16~17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소년 형법범죄 범죄유형별·연령층별 현황 (2019년)

[단위 : 명(%)]

연령 범죄유형	계	14~15세	16~17세	18세
계	54,497(100)	18,721(34.4)	22,195(40.7)	13,581(24.9)
재 산 범 죄	27,809(100)	10,879(39.1)	11,476(41.3)	5,454(19.6)
강력범죄(폭력)	18,622(100)	5,671(30.5)	7,253(38.9)	5,698(30.6)
강력범죄(흉악)	3,665(100)	1,141(31.1)	1,572(42.9)	952(26.0)
풍 속 범 죄	192(100)	34(17.7)	71(37.0)	87(45.3)
위 조 범 죄	1,350(100)	139(10.3)	686(50.8)	525(38.9)
과 실 범 죄	131(100)	53(40.5)	53(40.5)	25(19.1)
기 타 범 죄	2,728(100)	804(29.5)	1,084(39.7)	840(30.8)

주 : 대검찰청, 『2019 범죄분석』.

<표 7>은 2019년 한 해 동안 소년 특별법범죄를 주요 범죄유형별로 구분하여 연령층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18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특가법(도주차량)으로 57.1%이고, 16~17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53.9%이며, 14~15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36.6%이다.

&lt;표 7&gt; 소년 특별법범죄의 주요유형별·연령층별 현황 (2019년)

[단위 : 명(%)]

연령 범죄유형	계	14~15세	16~17세	18세
계	11,750(100)	2,062(17.5)	5,691(48.4)	3,997(34.0)
교 특 법	2,270(100)	191(8.4)	1,044(46.0)	1,035(45.6)
도 교 법	4,663(100)	1,144(24.5)	2,316(49.7)	1,203(25.8)
저 작 권 법	43(100)	3(7.0)	18(41.9)	22(51.2)
성 매 매 법	106(100)	18(17.0)	30(28.3)	58(54.7)
아동·청소년성보호법	309(100)	113(36.6)	135(43.7)	61(19.7)
특가법(도주차량)	7(100)	-	3(42.9)	4(57.1)
정보통신망법	634(100)	170(26.8)	251(39.6)	213(33.6)
화학물질관리법	76(100)	18(23.7)	41(53.9)	17(22.4)
기 타	3,642(100)	405(11.1)	1,853(50.9)	1,384(38.0)

주 : 대검찰청, 『2019 범죄분석』.

### III. 소년범죄자의 처리

교정복지는 교정의 문제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대처함으로써 범죄자나 비행소년의 개인적 차원은 물론 그들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처함으로써 당연한 문제뿐만 아니라 재범예방 차원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범죄와 비행이 야기시킨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여 사회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옥필훈, 2009).

국가는 모든 국민의 보호자이며, 따라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이 복지정책적인 관념을 국친사상(Parens Patriae)이라고 한다(최종식, 1994).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형사정책적으로 국가가 소년을 형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소년의 부모된 입장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상에 바탕을 둔 형평법(equity law) 이론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정영석·신양균, 1998). 우리나라 소년법은 소년 보호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소년의 인격, 행위, 태도에서 나타나는 개성과 환경을 중시해야 한다는 인격주의(소년법 제1조, 제4조), 범죄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우범소년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예방주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게 처벌위주가 아닌 치료와 개선, 건전한 환경조성을 통한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교육주의, 소년 개개인에 대한 개별화된 처우를 해야 한다는 개별주의, 소년의 환경에 대한 연구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적절한 대책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과학주의, 국가와 사회기관, 민간단체, 가정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협력주의 그리고 소년의 사회적 노출에 따르는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인권보장하기 위한 밀행주의 등이 있다(배종대, 1998).

우리나라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는 주로 경찰, 검찰, 법원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소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분화되어 전자는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하고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년사건의 이원적 처리는 소년을 가급적 형사사법의 낙인을 찍지 않고 선도·보호하여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키시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한국소년법학회, 2006).

## 1. 소년보호사건

### 1) 의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비행소년은 모두 심정이 미숙하고 사회와의 조화, 적응이 불완전한 소년이므로 이러한 소년에 대하여는 우선 그 건전한 육성(소년법 제1조 참조)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따라서 보호처분의 본질은 무엇보다 먼저 육성과 교화이어야 한다. 비행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과하는 경우에는 먼저 육성 및 교화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그 소년이 다시 비행을 하여 사회에 불안과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회방위를 위한 배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보호처분은 육성 및 교화와 사회방위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 제1조는 이 점을 「환경의 조정과 성격의 교정에 의한 보호처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2) 소년심판절차

#### (1) 관할과 심판대상

보호사건에 대한 관할은 당해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며,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행한다(동법 제3조).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다음과 같다.

#### ① 죄를 범한 소년(제4조 제1항 제1호 : 범죄소년)

검사의 수사 결과 또는 소년형사법원의 법관의 심리의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당해 검사 또는 법관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동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도 범죄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3항).

#### ②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동법 동조 제1호 : 촉법소년)

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보호자 등도 이러한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 ③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동법 동조 제3호 : 우범소년)

우리나라는 형법상의 위반행위가 없더라도 우범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행초기단계에서의 선도·보호를 통하여 우범소년이 범죄소년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우범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현재 죄를 범하지도 않은 소년을 범죄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 등이 있어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법문상 소년법의 규정에서 ‘우범성’은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라고 해석할 수 있고(최종식, 1996), 경찰서장과 보

호자 등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등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거나 또는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항)고 명확히 우범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법해석상 위와 같은 논란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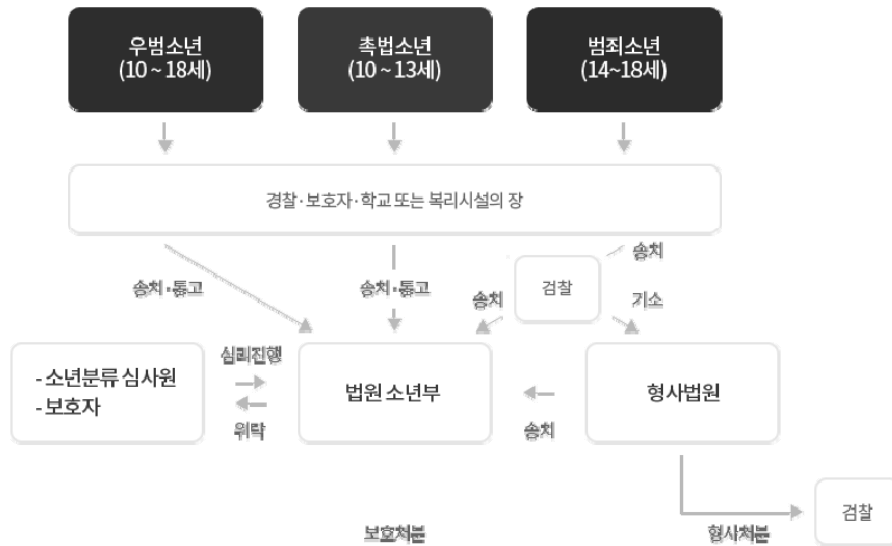
<표 8> 비행청소년의 구분

구분	연령구분	범죄행위	법적 근거	형사책임
범죄소년	14~20세 미만	형법 저촉	형법, 소년법	있음
촉법소년	12~14세 미만	소년법 저촉	소년법	없음
우범소년	12세~20세 미만	장래범죄 우려	소년법	없음

(2) 처리절차

보호대상소년을 송치 또는 통고받은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한 후 처분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아래 [그림 1] 참고).

[그림 1]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주 : 법무부 범죄예방국 내부자료

### ① 조사 및 심리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 대해 보호대상 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고, 보호자 등으로부터 통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한다(동법 제11조).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하고(동법 제9조),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조사나 심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본인과 보호자를 동행영장 내지 긴급동행영장에 기하여 동행을 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내지 제16조).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동법 제71조).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동법 제10조). 소년이나 보호자는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 ② 이송 및 송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른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소년부에 이송해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본인이 19세 이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동일하다(동법 동조 제2항). 소년부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동법 제49조 제2항).

### ③ 처분의 결정

이송하거나 송검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년부는 조사 및 심리한 보호사건에 대해 처분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동법 제29조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 (3)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법 제12조에서는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의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

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의 2 제1항에서는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서울(1977.4.30. 설립, 현재 운영중), 부산(1984.2.29. 설립, 2007.7.23. 폐지), 대구(1978.11.15. 설립, 2005.8.15. 폐지), 광주(1991.8.1. 설립, 2007.7.23. 폐지), 대전(1982.10.21. 설립, 2004.1.1. 폐지)에 설립되었으나, 2019년 12월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는 부산소년원 등 6개 소년원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21).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은 소년법원의 일시조치(감호조치)의 하나로서, 소년의 신병확보라는 하는 사법적 측면과 소년법원에 의한 잠정적인 소년보호기능의 수행이라고 하는 보호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년보호의 이념이 일차적으로 작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 3)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소년부 판사는 조사, 심리의 결과 보호대상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별적 및 과학적 심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처분을 과한다.

#### (1)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은 1호 내지 10호 처분이 있다(동법 제32조 제1항). 여기서 1호 처분, 6호 처분, 7호 처분은 개인이나 소년보호시설에 보호교육을 위탁하는 이른바 위탁처분이고, 대개 저연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처분이다. 특히 6호 처분은 소년원에 보내지기 직전의 범죄를 저지렀거나 가정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위탁되는데, 이 시기의 소년들은 범죄에 이미 익숙해졌거나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소년보호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한 소년의 위탁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정해두고 있어 제대로 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김남희, 2018). 또한 제32조 제8호를 둔 것은 사회내처우를 부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단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역시 적합하지 않은 소년에 대해 쇼크구금(shock imprisonment)을 통하여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처분이다.

보호관찰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시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수강명령과 제10호 처분은 12세 소년에게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2조 제3항, 제4항).

보호처분의 기간은 처분의 종류마다 다르다. 1호, 6호 및 7호 처분의 위탁기간은 6월이나,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4호 처분은 1년이다. 5호 처분은 2년이나,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보호관찰과 동시에 명해지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당해 처분이 종료되거나 가해제됨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2호 처분의 경우에는 100시간 이내, 3호 처분의 경우에는 200시간 이내로 한다(동법 제33조 제4항).

<표 9>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유형

구분	종류	주요 내용	기간	적용연령
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월 (6월 한도 1회 연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2년 (1년 한도 1회 연장)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월 (6월 1회 연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법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6월 (6월 1회 연장)	10세 이상
	8호	1개월이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아래 <표 10>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호처분 유형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개정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유형은 10가지이나 여러 가지 조합의 병과처분이 이루어져 24가지 유형이 생겨났다(법무연수원, 2021). 보호자 위탁처분인 1호 처분은 2015년 14.6%에서 소폭 감소하여 2019년에는 12.9%를 기록하였다. 1호 처분에 2호 처분(수강명령),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장기 보호관찰)과 병과하여 활용되는 비율은 지난 5년간 증감을 반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처분인 6호 처분은 단독으로 처분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5호 처분과 병과되는 비율은 2015년 3.4%에서 2019년 6.0%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인 8호 처분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처분되는 비율은 매우 낮고, 5호 처분과 병과되는 비율은 2015년 5.1%에서 2019년 4.3%로 소폭 감소하였다.

<표 10> 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2015~2019년)

[단위 : 명(%)]

보호처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호	3,771(14.6)	3,142(13.4)	3,135(12.9)	3,104(12.7)	3,103(12.9)
1,2호	2,609(10.1)	2,504(10.3)	2,504(10.3)	2,963(12.1)	3,143(13.0)
1,2,3호	581(2.2)	727(3.0)	727(3.0)	776(3.2)	574(2.4)
1,2,4호	3,696(14.3)	3,025(12.4)	3,025(12.4)	3,022(12.3)	2,844(11.8)
1,2,5호	803(3.1)	969(4.0)	969(4.0)	866(3.6)	1,048(4.3)
1,2,3,4호	1,627(6.3)	1,393(5.7)	1,393(5.7)	1,262(5.2)	838(3.5)
1,2,3,5호	1,571(6.1)	1,519(6.2)	1,519(6.2)	1,238(5.1)	1,269(5.3)
1,3호	1,133(4.4)	851(3.6)	851(3.5)	754(3.1)	759(3.1)
1,3,4호	1,832(7.1)	1,194(5.1)	1,086(4.4)	958(3.9)	915(3.8)
1,3,5호	1,082(4.2)	891(3.8)	802(3.3)	754(3.1)	847(3.5)
1,4호	2,299(8.9)	1,923(8.2)	1,508(6.2)	1,447(5.9)	1,517(6.3)
1,5호	647(2.5)	522(2.2)	505(2.1)	443(1.8)	627(2.6)
2호	16(0.1)	59(0.3)	159(0.7)	274(1.1)	187(0.8)

3호	49(0.2)	87(0.4)	67(0.3)	175(0.7)	200(0.8)
4호	40(0.2)	154(0.7)	270(1.1)	279(1.1)	231(1.0)
4,6호	46(0.2)	33(0.1)	41(0.2)	32(0.1)	52(0.2)
5호	19(0.1)	27(0.1)	80(0.3)	81(0.3)	109(0.4)
5,6호	883(3.4)	1,063(4.5)	986(4.0)	1,229(5.0)	1,440(6.0)
5,8호	1,316(5.1)	1,012(4.3)	1,099(4.5)	1,194(4.9)	1,036(4.3)
6호	2(0.0)	5(0.0)	7(0.0)	5(0.0)	5(0.0)
7호	141(0.5)	105(0.4)	198(0.8)	230(0.9)	269(1.1)
8호	5(0.0)	3(0.0)	-	9(0.0)	25(0.1)
9호	794(3.1)	770(3.3)	972(4.0)	842(3.4)	821(3.4)
10호	866(3.3)	770(3.3)	756(3.1)	779(3.2)	780(3.2)
기타병과처분	83(0.3)	855(3.6)	1,724(7.1)	1,758(7.2)	1,492(6.2)
합계	25,911(100)	23,526(100)	24,383(100)	24,494(100)	24,131(100)

주 : 대법원, 『사법연감』, 각년도

**(2) 보호처분의 효력**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동법 제53조). 소년부 판사는 수탁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37조 제1항). 보호처분의 변경은 당해 보호처분의 내용이 소년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보호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보호처분의 결정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43조). 그러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동법 제46조).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2. 소년형사사건**

소년법 제3장 제48조에서 제67조의 2까지는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8조),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동법 제49조 제1항)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9조 제2항). 또한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9조 제3항).

### 1) 경찰에서의 처리

비행소년을 통제하는 데 있어 경찰의 주된 역할은 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를 위한 제반활동을 비롯하여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이며, 가정·학교·종교단체 및 기타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비행을 예방·선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유학희, 2008). 소년에 대한 사법처리는 대부분 경찰에 의해서 개시되는데, 첫째, 범죄소년을 검거한 때에는 그 범죄소년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둘째,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훈방하거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 2) 검찰에서의 처리

검사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재판에 당사자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형집행을 지휘·감독하는 등 일반 형사사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년사법에서도 검찰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검사는 소년사건을 불기소함으로써 사법절차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유학희, 2008).

### 3) 법원에서의 처리

법원에서의 소년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면, 먼저 공소가 제기된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일반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법정에서 처리가 진행하게 되며,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법원에서는 경찰·검찰·법원에서 보내 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유학희, 2008). 소년법원은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위·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의견, 그 밖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처분을 결정한다(유학희, 2008).

## IV.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교정복지 실천방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년의 특징에 비추어 소년법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인도적·복지적인 견지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지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송광섭, 1996).

### 1. 가정환경과 학교교육의 중요성

위의 위 소년범죄의 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년들이 비행 또는 범죄로 빠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가정환경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불화는 자녀에게 갈등적이고 전제적인 가정분위기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장하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비행도 예외는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있다(Adler, F/Mueller,

Gerhard O.W/Laufer, William, S., 1991 ; 김준호, 김순형, 1992).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분위기와 부모의 따뜻하고 이해깊은 배려와 사랑,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드럽고 지속적인 대화의 유지는 소년범죄의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거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인성교육이란 ‘인간으로서 필요한 올바른 덕성을 바탕으로 타인과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의 습관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다(신재한·김상인, 2019). 학교는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한 자아실현의 교육의 장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입시라는 일률적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년들은 성적과 진학에 대한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 살아가게 된다(박성희, 1997). 따라서 학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으로는 교육과정상의 문제, 성취동기의 육성과 의지훈련상의 문제, 형식적인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 교우관계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이현식, 1981).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길을 제시하여야 할 학교현장에서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보살핌, 교사와 학부모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 2. 소년보호주의의 이념을 살리는 소년사법체계의 효율적 운영

소년보호이념 정착을 위하여 소년사법체계를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통계자료를 살펴본다면, 법원에서의 처리 결과 중 보호처분에 있어 소년원 송치를 상징하는 8호, 9호, 10호 처분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은 소년보호 이념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윤태현, 2017). 둘째,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현행법상 경찰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훈방권한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 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그 직무집행 행위를 했다면 형사피의사건을 입건수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2.06.08. 선고 82도117 판결). 셋째, 검찰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 선도에 대한 위탁을 법무부 훈령 제363호로 규정되어 있는 법사랑위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임)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사랑위원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제도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보호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위의 범죄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는 8호, 9호, 10호 처분의 비율을 더욱 낮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는 8호 처분의 경우 그 처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심리적 및 정서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낙인효과에 의한 재범발생이 우려되기에 매우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윤태현, 2017).

## 3. 소년 다이버전의 문제점과 회복적 사법 등 교정복지 발전과제

최근 세계적인 흐름으로 새로운 다이버전(Diversion)의 형태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 부각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를 위한 절차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실제 사안에서 다이버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없이 관행위주의 다이버전의 효과성만을 운운하기보다는 사건의 심각성과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단계별 다이버전의 실무운용도 필요하다(옥필훈, 2021). 미국에서 다이버전은 1970년대부터 연방정주의 주도하에 연방의 풍

부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개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연방자금이 삭감됨으로써 소극적이거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 근거로서 다이버전의 시행이 오히려 비공식적인 처리를 일상화함으로써 사회통제망을 넓히는 결과로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옥필훈, 1998). 독일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하에 1970년대 이후에 활발히 논의되었지만 1989년 제1차 소년법원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한 연방정부는 소년검사와 소년법관의 비공식적인 대응책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 1990년 개정소년법원법을 통하여 가해자-피해자-화해(Täter-Opfer-Ausgleich) 등의 다이버전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내 처우를 입법화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년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1922년 형사소송법에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에 의한 기소 유예제도를 인정함으로써 단순형 다이버전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으로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 이미 미죄처분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미죄처분율은 1980년대 초까지 증가경향을 보여, 소년의 경우 영미법의 영향하에 범죠평년 뿐만 아니라 14세부터 19세까지의 우범소년과 14세 미만의 촉범소년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범죠평년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과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형사처분을 과해야 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일반 형사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옥필훈, 1998).

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의 뉴패러다임으로 일컬어지며, 기존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어 19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사법의 이념이다(홍봉선·남상철, 2006 ; 배임호, 1995).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범죠평문제 해결의 능동적 주체로 끌어들이고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피해자의 화해 및 조정을 강조하고 있어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교정복지에 접목시킬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win-win 방안이 가능하다(홍봉선, 2010). 불의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바로잡기 위해 형벌 뿐만 아니라 회복도 포함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와 같이 회복적 처리의 양이 매우 많고, 미국과 같은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J. Braithwaite, 2006). 우리나라에서 그 한 실례로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27일과 2018년 10월 12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된 “청소년 갈등해결 써어클 (Conflict Solution Circle)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는 비행청소년들이 자신과의 관계회복, 가족 및 학교 혹은 직장/지역사회와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배임호, 2019). 따라서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소년범죠평에 대한 이해는 소년사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보완적인 제도로 이해할 수 있어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기능 제고

보호관찰은 교정복지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 있으므로 자신의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위한 제반 정비가 어떤 수용시설의 서비스보다 덜 들며, 범죠평인 혹은 비행청소년의 재활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최옥채, 2006). 우리나라 보호관찰은 1989년 소년보호관찰부터 시작되었고, 1994년부터 성인에 확대된 이후에 해마다 꾸준히 늘어 성인이 소년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년범죠평인 뿐만 아니라 성인범죠평인까지 보호관찰제도를 실시

하게 된 개정 형법(1995.12.29. 시행)의 규정은 행형 이념이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배임호, 2003). 다만 위의 범죄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제4호와 제5호는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에 관한 것으로 매년 증가함을 알 수 있으나, 다른 처분과의 병과처분은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호관찰 운영에 있어서는 종래에 전문인력의 부족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부족 및 집행상의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성철, 2003)이 있어 왔으나, 최근 소년 재범률의 증가는 보호관찰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무관하지 않다(유용장, 2017).

## 5. 교정상담의 활성화

교정상담의 개념에 대하여 법무부는 “교정현장에서 수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교정직원이 수용자가 가진 여러 문제를 대화를 통해 지도관리하여 수용생활의 적응을 돕고 수용자 스스로 부정적 감정과 억눌린 욕구를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시켜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법무부, 2002). 교정상담의 목표는 크게 시설내 적응과 사회의 적응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홍종관, 2013)고 하나, 이에 대하여 민주성이란 시민성의 확립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점이 있다(천정환, 2020). 교정상담의 종류로는 1:1 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치료공동체, 인지행동 치료,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행동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사이코 드라마,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완훈련 프로그램, 친환경적 행동기술 훈련, 인문교정 프로그램,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교도소 아버지학교, 마음챙김 명상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이영애, 2018). 소년범죄자 중에 정신적 어려움 해소, 스트레스, 절망감, 우울 등의 정신적 고통 및 자살충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정상담은 매우 중요하다(박기석, 2021).

## V. 맺음말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통계와 특징을 둘러싼 실무적인 논의 등을 통하여 살펴보건대 성인범과는 달리 소년범은 달리 처우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정환경과 학교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다양한 교육적 성과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입시위주·경쟁구도의 교육으로 성장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진로를 설계하고 이를 통하여 본인에 맞는 직업을 갖지 못한 교육제도인지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회복 등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최근 수년간의 발생한 소년범죄의 실태를 통하여 소년범죄의 특징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그 죄질이 날로 흉악해져가고 있고, 성인범죄의 재범률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 사회는 과연 소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 소년범죄를 교정처우를 통하여 범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년범죄 처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마련도 필요하다. 소년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주고 경험을 치유하는 회복적 교도소 프로젝트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김영식, 2016). 따라서 계속적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둘러싼 논의와 더불어 각 기관 및 성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

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1세기의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성인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에서의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하며 본인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자료

- 김남희 (2018) 소년범죄의 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6호 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영식 (2016) 회복적 교도소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10권 제3호, 127-146.
- 김용우 (1994) 소년비행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준호·김순형 (1992)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화관광부 (2006) 청소년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 박기석 (2021) 형법상 특별예방과 교정상담. 법학논총 제41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33-256.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2011) 형사정책. 서울 : 형사정책연구원.
- 박성희 (1997)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행동연구 제2호, 99-112.
- 법무연수원 (2021) 2020 범죄백서. 충북 : 법무연수원.
- 배종대 (1998) 형사정책. 서울 : 홍문사.
- 배임호 (1995) 21세기를 향한 도전 : 회복적 정의, 교정연구 제5호.
- \_\_\_\_\_ (2003) 사회내처우의 쟁점과 과제, 교정연구 제19호, 191-218.
- \_\_\_\_\_ (2019)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정 복지 실천 개입에 관한 연구 - 17년 동안 교정복지실천 케이스를 중심으로 -. 교정연구 제29권 제1호, 3-35.
- \_\_\_\_\_ (2021) New Paradigm. 경기 : 공동체.
- 손순용 (2006) 비행청소년과 교정복지 방안. 교정복지연구 제5호, 91-111.
- 송광섭 (1996) 형사정책. 서울 : 대왕사.
- 신재한·김상인 (2019) 4차 산업혁명시대 인성교육의 실제. 경기 : 교육과학사.
- 안성조 (2008) 사이코패스의 범죄충동과 통제이론 - 사이코패스의 특이성과 통제이론적 접근의 한계 -. 경찰법연구 제6권 제1호, 190-226.
- 양문승·송재영 (2012) 소년범의 범죄지속에 대한 이론적 분석, 경찰학논총 제7권 제1호, 211-241.
- 윤주영 (2006) 비행청소년 문제행동의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교정복지연구 제5호, 113-148.
- 옥필훈 (1998) 소년사법에 있어서 다이버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_\_\_\_\_ (2009) 사회내처우에 있어서 교정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29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45-182.
- \_\_\_\_\_ (2019) 범죄학검형사정책. 인천 : 진영사.

- \_\_\_\_\_ (2021) 소년 다이버전에 관한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교정복지연구 제70호, 97-122.
- 유학희 (2008)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윤용장 (2017) 소년보호관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11권 3호, 1-29.
- 윤탤희 (2017) 소년범죄 흐름과 특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3호, 63-96.
- 이성식·강은영·최수형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9권 2호, 69-102.
- 이성철 (2003) 한국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영애 (2018) 교도소 수형자의 교정상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교육연구 제3권 제2호, 47-71.
- 이용주 (2019) 청소년 범죄의 유형과 원인 및 예방대책. 교정상담학연구 제4권 제2호, 27-49.
- 이은영 (2012) 소년강력범죄의 원인 및 현상에 관한 고찰. 범죄와 비행 제2권, 한국범죄비행학회, 65-82.
- 이창무 (2011) 청소년 범죄 원인의 통합이론 모형에 대한 탐색적 고찰. 범죄예방연구 통권
- 이현식 (1998)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지역과 세계 8권, 1-10.
- 점승헌 (2002) 우범소년의 우범사유와 우범성. 소년법연구 제1호, 328-329.
- 정영석·신양균 (1998) 형사정책. 서울 : 법문사.
- 천정환 (2020) 한국의 교정상담사역(선교)의 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제65호, 129-165.
- 최병각 (2007)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국가인권위원회.
- 최옥채 (2006) 교정복지론. 서울 : 학지사.
- 최종식 (1995)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일고찰. 강원법학 제7권, 191 - 232.
- \_\_\_\_\_ (1996) 소년법상 우범소년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8, 457-414.
- 홍봉선 (2010)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제도 발전 방안. 보호관찰 제10권 1호, 85-125.
- 홍종관 (2013) 교정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행동연구 제18집, 93-112.

## 2. 외국자료

- Adler, F/Muller, Gerhard, O.W/Laufer, William S (1991) Criminology, U.S : McGraw-Hill.
- Barkan, Steven E (1997) Criminology : A Sociological Understanding, U.S : Prentice Hall.
- Conklin, John E (1995) Criminology, U.S : Pearson.
- J. Braithwaite (2006)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Through Restorative Justice in Michael Dowdle (ed.) Rethinking Public Account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 기타 자료

- 대법원 1982.06.08. 선고 82도117 판결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

Abstract

## A Study on the Actual State and Correctional Welfare Practice in Juvenile Crime

OK PIL HUN  
(Vision College of Jeonju)

Recent statistics on juvenile crime and practical discussions surrounding its characteristics agree that unlike adult offenders, juvenile offender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However, the most important part in reality is the home environment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the school field. In the meantime, we need to listen to various educational achievements of South Korea, especially through education based on university entrance exams and competition, but most of all, it is important to restore credibility in public education because it is an educational system that finds talents of South Korean students early on.

We have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juvenile crime in recent years. Looking at its characteristics, the juvenile crime is getting worse day by day and shows results that are never inferior to the recidivism rate of adult crime, so our society needs to reflect on whether it is doing a good job of dealing with juvenile crime. It is important to prepare an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juvenile crime through correctional treatment. It is also necessary to be fully aware of the various institutional problem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juvenile crime and to come up with policy alternatives to them. There is also a need to look positively at the serious discussion of the Restorative Prison Project, which give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crime and heals a negative experience. Therefore, the vicious cycle of juvenile crime will not be broken and serious discussions surround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juvenile crime will be needed, as well as the continuous attention and activities of institutions and adults, and policy efforts will be needed in these areas.

Adolescents in the 21st century are our future. As a precursor to becoming an adult, it is necessary to make a holistic effort to discover the dreams and talents of young people in the welfare state early, design career paths, and have a job as well as in homes, schools, and communities.

Key Words : juvenile crime, correctional welfare, Juvenile Justice, effective countermeasure